

제2642호
2019. 3. 20.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9-27호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2
 제2019-28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3
 제2019-29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4

● 공 고

제2019-195호 : 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5
 제2019-20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차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7
 제2019-215호 :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11
 제2019-21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5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 -27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중구 입정동 29-1(세운3구역 일대)

지적도근점 번호	평면좌표(GRS80타원체)		평면좌표(베셀타원체)		소재지
	중선좌표 (X)	횡선좌표 (Y)	중선좌표 (X)	횡선좌표 (Y)	
9676	552,102.81	199,572.44	451,796.98	199,501.56	중구 산림동 200-7
9677	552,013.19	199,582.31	451,707.36	199,511.43	중구 산림동 156-13
9678	551,962.07	199,586.98	451,656.24	199,516.10	중구 산림동 156-34
9679	551,896.66	199,592.86	451,590.83	199,521.98	중구 을지로4가 1-3
9680	551,894.88	199,563.81	451,589.05	199,492.93	중구 을지로4가 314-3
9681	551,891.53	199,511.33	451,585.70	199,440.45	중구 을지로3가 245-1
9682	551,885.74	199,414.21	451,579.91	199,343.33	중구 을지로3가 164-1
9683	551,881.18	199,341.32	451,575.35	199,270.44	중구 을지로3가 282-8
9684	551,927.21	199,337.28	451,621.38	199,266.40	중구 을지로3가 164
9685	551,973.94	199,332.48	451,668.11	199,261.60	중구 을지로3가 164
9686	552,026.67	199,327.48	451,720.84	199,256.60	중구 입정동 29-1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비고
설치일	2019년 3월 8일				
표지의재질	표철				
측량성과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28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 구 신축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충무로2가 52-3 외 1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	2019.03.20.	수표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4.22.	청계천의 수표다리 명칭 인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29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 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연번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52-8	2019.03.20.	건물말소
2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3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52-3	2019.03.20.	건물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195호

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2019. 1. 1.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공시가격의 사전 열람가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구청 및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필요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열 랐

- 기 간 : 2019년 3월 15일 ~ 2019년 4월 4일
- 장 소 : 구청 세무1과 및 주민센터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9년 3월 15일 ~ 2019년 4월 4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 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다르거나 관련 표준주택의 가격 및 인근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아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구청 세무1과 및 주민센터 민원실
- 제출방법 : 구청 세무1과 및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의견제출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회신

※ 문의전화 : 중구청 세무1과 과표팀 【 ☎ 02) 3396 - 5152, 5154 】

2019.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2019.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의 사전 열람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에서 열람하시고 필요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 2019년 3월 15일 ~ 4월 4일
 - * 공시 전에 소유자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
-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년 3월 15일 ~ 4월 4일
- 제출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에서 접수
- 제출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 의견제출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의견제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드립니다
- 처리결과 확인기간 : 2019. 4. 30. ~ 5. 10.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 ☎ 1644-2828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208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개정 및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치매관련 서비스 센터의 명칭 변경 및 누락·보완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에 의거 종전의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함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나. 치매관리법에 의거 센터업무에 대한 내용 현행화(안 제3조)

다.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협약체결 사항에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제2항) 및 협약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개정(안 제4조제3항)

라. 준용 근거법령을 “지역보건법”에서 “치매관리법”으로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추가(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참조: 건강관리과, 주소: 서울특별시 다산로39길 16(무학동), 문의전화: 02-3396-6373, FAX: 02-3396-400

0, 메일: monesa@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2조제1항 중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치매관리법」,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 조 (목 적) ----- -----치매안심센터 -----.</p>
<p>제2조(명칭 및 위치) ①명칭은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생 략)</p>	<p>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치매안심센터 ----- 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업무 2. 치매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3. 치매 조기검진에 관한 업무 4. 치매환자의 발견·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5. 치매관련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6.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에 관한 업무</p>	<p>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p>

<p>8. <u>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u> 9. <u>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 노인보전에 관한 업무</u></p>	<p>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제4조(운영의 위탁)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u>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p> <p>③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u>2년</u>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p> <p>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p>	<p>제4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u>수탁기관의 명칭·주소,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p> <p>③----- 3년 ----- ----.</p> <p>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u>치매관리법</u>」, 「<u>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u>」, 「<u>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u>」등을 준용한다.</p>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215호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 제16조에 따라 「서울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아동현황 (정원)	개 원	비 고
신당하남 어린이집 (가칭)	중구 왕십리로 407 신당뉴스테이 103동	330.13㎡ (지상1층)	33명 (예정)	2019.7. (예정)	공동주택 관리동

※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이 필요하며 보육정원, 개원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시설은 위탁사 소유의 건물, 부지로 무상사용계약 종료 후 위탁사에 귀속되는 어린이집으로 구 직영 대상에서 제외

2. 위탁 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3. 신청 자격

가. 법인 또는 단체 :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개 인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공고일 현재 민간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

다. 공 통 : 운영체의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

4. 신청 제외 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

- 라. 운영주체의 지도·감독시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 마. 주된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5. 신청서 접수

- 가. 공고기간 : 2019. 3. 21.(목) ~ 2019. 4. 11.(목)
- 나. 접수기간 : 2019. 4. 2.(화) ~ 2019. 4. 11.(목) 18:00까지
- 다. 접수장소 : 증구청 여성보육과 (본관 1층)
-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월~금, 09:00~18:00)
(※토요일 · 공휴일 및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 마. 제출서류

구분	서류항목	운영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합산)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자부담 승낙서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 				※첨부의 제출서류 의거작성

바. 제출부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6부 (원본 1부, 사본 15부), 요약서 (16부, 3~5페이지 분량)

※ 쪽수표시 요망 및 자산현황 관련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는 원본에만 첨부

- 심사자료는 양면 인쇄, 쪽 표시, 목차 라벨 표시, 반드시 제본
- 면접심사 발표용 PPT를 2019. 4. 12.(금) 18시까지 e-mail 제출(purity36@junggu.seoul.kr)

6. 사업설명회 : 생략

※ 구청방문시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자료작성 및 심의기준 등 설명

7. 위탁조건

- 가.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나.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각 시설별 보육유형에 의한 취약보육은 반드시 실시하고 구에서 권장하는 취약보육에 대해 우선 실시하여야 함
- 다.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라.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인척 원장 임용금지 및 대표자 관계자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하며 개인의 경우 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함
 - ※ 친인척 : 직계존비속,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마.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
- 바.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계약서**」로 별도 계약 체결

8.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 가. 선정방법 :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 (※ 심사일은 별도 통지)
- 나. 심사항목 : 5개 분야
 -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 ※ 「2019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항목」 참고
- 다. 면접방법
 - 원장 내정자는 위탁 접수 후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전 사전 인적성검사(MMPI) 실시 (일정 별도 통지하며 불참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법인·단체 대표자(당일 위임자)와 원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발표 및 원장의 전문성 면접(PPT발표)후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라. 결과발표 : 중구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 수탁자에게 개별통지

9. 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나.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서류의 내용이 관계기관 확인시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심의 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 다. 위탁 운영조건 등 관련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라.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마. 법인·단체(개인) 대표자(당일 위임자)와 원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발표 및 원장의 전 문성 면접 실시함.
- 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 사. 위탁신청서는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고시/공고.예 공고문과 게재 함
- 아. 위탁신청서류 제출 시 요약서(3~5페이지 분량)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자. (가칭)신당하나어린이집은 2019년 7월 개원(예정)에 앞서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교사 채용 등이 사전에 선행되어야 할 어린이집으로 개원준비에 적극 참여가능해야 함.
-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여성보육과(**☎02-3396-5412**)로 문의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217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심공간혁신전략사업 추진인력 및 국가시책 지방행정혁신 전담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심공간혁신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일반임기제 정원 신설
 - [감축] 건축8급 1명 → [증원] 임기제 시설6급 1명(도시계획)
- 지방행정혁신 추진 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 조정
 - [감축] 사무운영(워드)9급 1명 → [증원] 행정7급 1명
- 2019년 공채 신규인력 배정직렬에 따른 행정직군 직류 조정
 - [감축] 방호(경비)9급 1명 → [증원] 방호(방호)9급 1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3396-4512, FAX:3396-8603, 메일:myonga79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규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 관련)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총 계	1,229	806	25	101	297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21	802	21	101	297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8	30	1	12	15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건축1,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8			8	
6급 소계	231	158	3	19	51
행정	151	96	3	8	44
세무	15	15			
사회복지	8	4			4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전기2,화공1)	5	5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5			5	
환경	1	1			
시설(토목6,건축6,지적3,디자인1, 도시계획1)	17	17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토목1,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2			2	
위생	0	0			
운전	3	3			
전기·운영(전기)	0	0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7급 소계		370	261	9	31	69
행정		216	141	6	8	61
세무		21	21			
사회복지		16	7		1	8
전산		3	3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전기6,화공3)		14	14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8	3		5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1	1			
약무		2			2	
간호		9			9	
시설(토목15,건축12,자적6, 디자인1, 도시계획2, 교통시설2)		38	38			
방송통신		2	2			
위생		3	3			
시설관리		6	6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1	1			
기계운영(기계1)		0	0			
농림운영(원예)		1	1			
8급 소계		348	238	2	28	80
행정		191	121	2	5	63
세무		32	32			
사회복지		23	6			17
전산		7	7			
방호		2	2			
공업(기계4,전기5,화공1)		10	10			
녹지		6	6			
보건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2	2			
시설(토목19,건축10,자적7,교통시설1)		37	37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1	1			
운전		6	6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1)		1	1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9급 소계		205	107	6	10	82
행정		50	20	2		28
세무		9	9			
사회복지		41	11			30
전산		1	0		1	
방호(경비6,방호1)		7	6	1		
공업(기계5,전기9)		14	13	1		
녹지		3	3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7,건축3,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운전		36	16	2	3	15
전기운영(전기)		4	4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12	3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다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총 계		1,229	806	25	101	297	총 계		1,229	806	25	101	297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21	802	21	101	297	일반직 계		1,221	802	21	101	297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정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8	30	1	12	15	5급 소계		58	30	1	12	15
행정		36	21	1		14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건축1,지적1)		3	3				시설(토목1,건축1,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8				8	의무		8				8
6급 소계		230	157	3	19	51	6급 소계		231	158	3	19	51
행정		151	96	3	8	44	행정		151	96	3	8	44
세무		15	15				세무		15	15			
사회복지		8	4			4	사회복지		8	4			4
전산		1	1				전산		1	1			
방호		1	1				방호		1	1			
공업(기계2,전기2,화공1)		5	5				공업(기계2,전기2,화공1)		5	5			
녹지		3	3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5				5	간호		5				5
환경		1	1				환경		1	1			
시설(토목6,건축6,지적3,디자인1)		16	16				시설(토목6,건축6,지적3,디자인1, 도시계획1)		17	17			
시설(토목·건축)		1	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토목1,건축1)		6	6				행정·시설(행정4,토목1,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2				2	보건·진료		2				2
위생		0	0				위생		0	0			
운전		3	3				운전		3	3			
전기·운영(전기)		0	0				전기·운영(전기)		0	0			

현행						개정안							
작업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작업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7급 소계		369	260	9	31	69	7급 소계		370	261	9	31	69
행정		215	140	6	8	61	행정		216	141	6	8	61
세무		21	21				세무		21	21			
사회복지		16	7		1	8	사회복지		16	7		1	8
전산		3	3				전산		3	3			
속기		3		3			속기		3		3		
방호		6	6				방호		6	6			
공업(기계5,전기6,화공3)		14	14				공업(기계5,전기6,화공3)		14	14			
녹지		3	3				녹지		3	3			
수의		1	1				수의		1	1			
보건		8	3			5	보건		8	3			5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환경		1	1				환경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9				9	간호		9				9
시설(토목15,건축12,자책, 디자인, 도시계획2, 교통시설2)		38	38				시설(토목15,건축12,자책, 디자인, 도시계획2, 교통시설2)		38	38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2	2			
위생		3	3				위생		3	3			
시설관리		6	6				시설관리		6	6			
운전		10	10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1	1				전기운영(전기)		1	1			
기계운영(기계1)		0	0				기계운영(기계1)		0	0			
농림운영(원예)		1	1				농림운영(원예)		1	1			
8급 소계		349	239	2	28	80	8급 소계		348	238	2	28	80
행정		191	121	2	5	63	행정		191	121	2	5	63
세무		32	32				세무		32	32			
사회복지		23	6			17	사회복지		23	6			17
전산		7	7				전산		7	7			
방호		2	2				방호		2	2			
공업(기계4,전기5,화공1)		10	10				공업(기계4,전기5,화공1)		10	10			
녹지		6	6				녹지		6	6			
보건		5				5	보건		5				5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간호		13				13
환경		2	2				환경		2	2			
시설(토목19,건축11,자책,교통시설1)		38	38				시설(토목19,건축10,자책,교통시설1)		37	37			
방재안전		1	1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1	1				시설관리		1	1			
운전		6	6				운전		6	6			
전기운영(전기)		3	3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1)		1	1				사무운영(워드1)		1	1			

현행							개정안						
작업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작업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9급 소계		206	108	6	10	82	9급 소계		205	107	6	10	82
행정		50	20	2		28	행정		50	20	2		28
세무		9	9				세무		9	9			
사회복지		41	11			30	사회복지		41	11			30
전산		1	0		1		전산		1	0		1	
방호		7	6	1			방호(경비6,방호1)		7	6	1		
공업(기계5,전기9)		14	13	1			공업(기계5,전기9)		14	13	1		
녹지		3	3				녹지		3	3			
보건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7,건축3,지적4)		14	14				시설(토목7,건축3,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위생		4	4			
운전		36	16	2	3	15	운전		36	16	2	3	15
전기운영(전기)		4	4				전기운영(전기)		4	4			
기계운영(기계)		3	2			1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13	4		1	8	사무운영(워드)		12	3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나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다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다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별정직 계		7	3	4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비서		1	1			
전문위원		2		2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비서		3	1	2		